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5417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5417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38414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신용보증기금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A

변론 종결 2017. 1. 12.

판결 선고 2017. 2. 2.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가단5384142 판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526,437원 및 그중 43,441,193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와 선정자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선정자 C는 피고에게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5. 6. 22. 접수 제138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면 9행부터 6면 제8행까지의 "2) 적극재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적극재산

① 강원 철원군 D 답 4494m² 및 E 297m²(이하 'F리 각 부동산'이라 한다): 적극재산으로서 가액 0원[F리 각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가 31,719,420원(= (4494m² + 297m²) x 6620원/m²)인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1. 채무자 선정자 회사,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8,000만 원 정도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다¹⁾ . 피고는 F리 각 부동산의 시가가 1억 250만 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의 시가에 따라 F리 각 부동산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약 4,250만 원(1억 250만 원 - 8,000만 원)으로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변함이 없다.]

② 파주시 G아파트 107동 903호(이하 '파주 아파트'라 한다): 적극재산으로서 가액 1억 300만 원[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주 아파트의 시가는 2억 3,3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5. 1. 8. 채무자 선정자 회사, 근저당권자 대한민국, 채권최고액 141,472,6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이 1억 3,000만 원 정도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파주 아파트의 적극재산으로서의 가액은 1억 300만 원(= 2억 3,300만 원 ~ 1억 3,000만 원) 상당이 된다.]

③ 이 사건 각 부동산 : 최대 시가 384,258,000원(갑 제8호증)

④ 적극재산 가액 합계 : 최대 487,258,000원(②항의 1억 300만 원 + ③항의 384,258,000원)】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19행부터 제7면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선정자 C에게 매각함으로써 피고의 책임재산의 부족상태는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는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선정자 C의 악의는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기영

판사박은영

판사강동원

별지

1)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물상담보로 제공되어 있다면,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분은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물상담보에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